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0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안철수 · 유용원 · 고동진

이헌승 · 김 건 · 박덕흠

김은혜 • 주진우 • 김미애

강대식 • 인요한 • 주호영

권영세 · 서천호 · 김석기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통제할 근거가 부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사회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다.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 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국외에서 이루 어진 행위라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 마.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침해 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행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 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1항).
- 자.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2항).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 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 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 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 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안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우리나

라의 국가 ·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국회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의 해외유출 현황 및 사실관계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가핵심 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을 법무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직접 하는 경우
-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의 비공개 진술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벌금"을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15년"을 "20년"으로, "15억원"을 "20억원"으로, "벌금"을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와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 략)	및 해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	<u><</u> 삭 제>
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	
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u></u> 할 수 있다 <u>.</u>	
<u> </u>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
	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
	<u>다.</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
	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기
	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
	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에게 자료제 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의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신 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 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 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 은 경우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 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를 가지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 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등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
 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
 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제9조의2 (생 략)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조사) ① · ② (생 략) <신 설>

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산업 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 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4(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 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 위라도 우리나라의 국가 ·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는 적용한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 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

③ (생 략) <신 설>

제34조(비밀유지의무)(생략)

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해신고 와 관련된 기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의2(국회보고)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해 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및 사실관계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밀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u>사용되게</u>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u>3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u>벌</u>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민 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1.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 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 수사기관의 장에게 직접 하는 경우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의 비공개 진 제36조(벅친) ① -----

1004(27) (2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u>5년</u> -
<u>벌</u> 금(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u>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u>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
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
<u>금)</u>
②
사용된 건임을 악면서도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u>벌금</u>에 처한다.

<u>20년</u> <u>20</u>
<u>억원벌금(위반행위로</u>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
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
<u>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u>
③ ~ ⑧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